

의안 번호	536
----------	-----

題目：'95年度 第1次 公有財產管理計劃 變更同意案

提出年月日：1995年 2月 日

提出者：大田廣域市長

1. 제 안 이 유

- 서구 둔산동 행정용지내에 신축이전코자하는 신청사는 당초 '94년도에 착공할 예정으로
 - '93.11. 6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 '93.12.16 시의회 제28회 정기총회에서 '94년도 집행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결을 받은바 있으나
- 완벽한 시공을 위한 설계도서의 정밀한 검토 및 발주에 필요한 법적 소요일수의 부족등으로 당초예정 일정이 지연되어 착공시기가 '95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 의회에서 의결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당해년도에 미집행된 사항은 익년도에 다시 의회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회의결을 받기 위하여 '95.1.21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임.

2. 주 요 골 자

- 공 사 명 : 대전광역시 신청사 신축공사
- 위 치 : 서구 둔산동 1420번지 (행정용지내)
- 규 모 : 연면적 86,214㎡ (26,079평) - 지하 2층, 지상 21층
- 공사기간 : '95. 2 ~'98. 11 (3년10월)
- 공 사 비 : 960 억원

3. 본 문

□ 대전광역시 신청사 신축

- 신청사의 노후화와 업무수행 공간의 절대부족 등으로
- 서구 둔산동 행정용지내에 신청사를 신축이전코자함.

○ 공사 개요

- 위치 : 서구 둔산동 1420번지 (행정용지)
 - 부지 : 68,908㎡ (20,845평)
- 규모 : 연건평 86,214㎡ (26,079평)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본청 : 22,034평 (지하2층, 지상21층)
 - 의회 : 4,045평 (지하2층, 지상 4층)
- 공사기간 : '95. 2 ~ '98. 11 (3년10월)
- 공사비 : 960 억원
 - '95 년도 : 27,492 백만원
 - '96 년도 : 22,836 "
 - '97 년도 : 22,836 "
 - '98 년도 : 22,836 "

참 고

①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내용과 달라진 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신축규모	○ 연면적 : 24,816 평 - 본 청 : 21,170 ♯ - 의 회 : 3,646 ♯	○ 연면적 : 26,079평 (증 1,263평) - 본청 : 22,034 ♯ (증 864 ♯) - 의회 : 4,045 ♯ (증 399 ♯)
공사기간	○ '94. 10 ~ '97. 10	○ '95. 2 ~ '98. 11
공사금액	○ 960 억원	○ 변 동 없 음

② 그간의 추진경위 및 향후추진계획

○ 추진 경 위

- 1993. 1. 7 ~ 4. 30 : 신청사 계획설계(안) 현상공모
- 1993. 5. 9 ~ 5. 13 : 응모작 전시 (시민회관)
- 1993. 8. 29. : 계획설계완료
- 1993. 9. 17. : 계획설계중결보고회
- 1993. 9. 27. : 교통영향평가
- 1993. 12. 15. : 건설부 중앙건설 기술심의
- 1993. 12. 23. : 기본설계 완료
- 1994. 11. 4. : 실시설계 완료
- 1994. 12. 19. : 건축협의를 (서구청)

○ 향후추진계획

- 1995. 1 월중 : 입찰공고
 - 1995. 2 월중 : 입찰, 계약체결, 착공
 - 1998. 11 월중 : 준 공
- ※ 추진일정은 행사진행 여건에 따라 다소 유동적임.

③ 소요재원 조달계획

○ 공 사 비 : 96,000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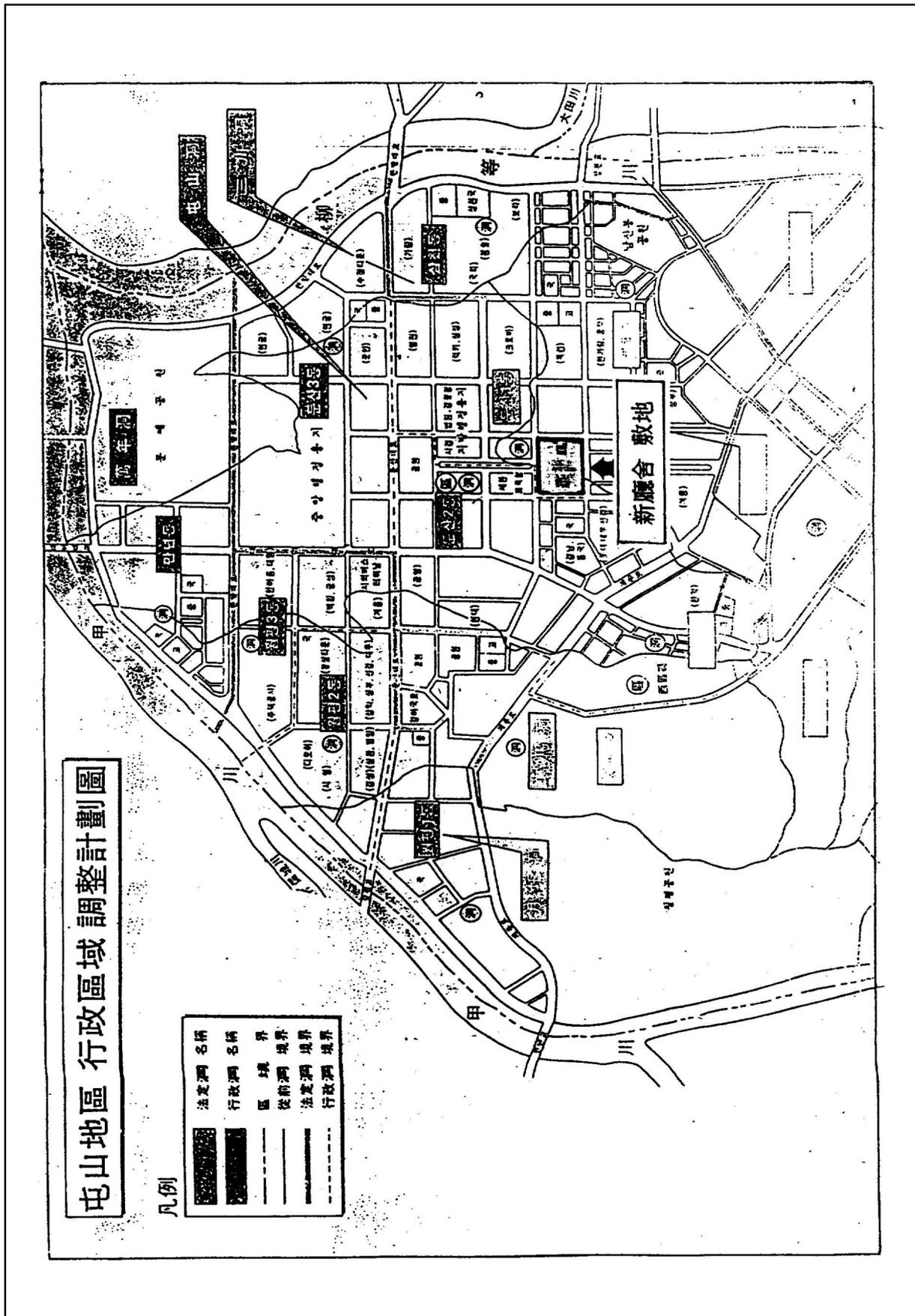
- 일반재원 : 52,618 백만원 (54.9%)
- 특정재원 : 43,382 백만원 (45.1%)
 - 시유재산 매각대 : 20,446백만원 (26,330평)
 - 임차보증금 회수 : 2,936백만원
 - 경 영 수 익 금 : 20,000백만원 (지하상가 조성분양등)

'95년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 (7-2)

(단위 : m², 천원)

회계명 : 일반회계

일련 번호	지 목	산 포 시		추 경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 득 재 산 소 유 자 주 소 · 성 명	비 고
		소 계	지 수 량					
1	건 물	서구 봉산동 1420	86,214	96,000,000	'95 상반기	시 본청 경사인축	대 전 광 역 시 장	



關係法令拔萃書

[地方自治法]

第35條 (地方議會的 議決事項) ① 地方議會는 다음 사항을 議決한다.

1. 條例의 制定 및 改廢
2. 豫算의 審議, 確定 _
3. 決算의 승인
4. 法令에 規定된 것을 제외한 使用料, 手數料, 分擔金, 地方稅 또는 加入金의 賦課와 徵收
5. 基金의 設置 · 運用
6. 重要財産의 取得, 處分
7. 公共施設의 設置, 管理 및 處分

[地方財政法]

第77條 (公有財産의 管理計劃) ① 地放自治團體의 長은 그 所管의 豫算과 事業豫定에 따라 每年 公有財産의 取得, 處分에 관한 計劃 (以上 “管理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 地方議會的 議決을 얻어야 한다.

[大田直轄市 公有財産 管理修例]

第37條 (公有財産 管理計劃) ① 法 第77條 및 令 第84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財産管理計劃은 市長이 前年度 12月 31日 까지 地方議會에 提出하여 議決을 받아 公有財産의 取得, 處分 및 管理를 하여야 한다.

다만, 年度中에 公有財産 管理計劃의 變動이 있을시는 變更計劃을 作成하여 議會議決을 받아야 한다.

'9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 사 보 고

1995년2월 20일

내 무 위 원 회

I. 심 사 경 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2월 9일 대전광역시장
2. 회부일자 : 1994년 2월 10일
3. 상정일자 : 제3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1995. 2. 20)
상정, 심의,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1. 제 안 이 유

- 서구 둔산동 행정용지내에 신축 이전코자 하는 신청사는 당초 '94년도에 착공할 예정으로
 - '93. 11. 6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 '93. 12. 16 시의회 제28회 정기총회에서 '94년도 집행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결을 받은바 있으나

- 완벽한 시공을 위한 설계도서의 정밀한 검토 및 발주에 필요한 법적 소요일수의 부족등으로 당초예정 일정이 지연되어 착공 시기가 '95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 의회에서 의결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당해년도에 미집행된 사항은 익년도에 다시 의회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회의결을 받기 위하여 '95. 1. 21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임.

2. 주 요 골 자

- 공 사 명 : 대전광역시 신청사 신축공사
- 위 치 : 서구 둔산동 1420번지 (행정용지내)
- 규 모 : 연면적 86,214m² (26,079평) - 지하 2층, 지상 21층
- 공사기간 : '95. 2 ~ '98. 11 (3년 10월)
- 공 사 비 : 960억원

Ⅲ. 전문위원 검토요지 (전문위원 : 정진철)

본 안건은 지난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었던 사안으로 둔산 신청사 건립건에 대하여 계획 공기지연에 따른 예산 미집행과 규모변경에 따라 금번 다시 동의를 구하려는 내용임.

공사개요를 살펴보면 연면적은 총 26,079평으로써 지난해 11월에 완료된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1,263평이 늘어난 것이며, 공사기간도 금년 2월부터 '98년 11월까지로 당초보다 1년이 연기되었음.

사업비는 일반재원 526억원과 특정재원 434억원등 모두 960억 원으로써 금년도에는 공사비 및 감리비등으로 275억여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이중 채무부담 50억원을 포함한 205억원은 금년 당초 예산에 이미 확보한 상태임.

앞으로 계획 공정대로 본 사업이 진행되고 사업비 역시 전액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볼때는 부족분 약 70억원에 대하여 금년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봄.

그러나 누차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이지만 계속되는 공기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난해에도 공사비 약20억원을 확보해 놓고도 착공을

못하여 금년도로 이월시키는 시행상의 난맥을 가져왔는데 금번 역시 이러한 문제들을 심도있게 연구·검토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그리고 재원확보 방안에 있어서도 일반재원의 부족분은 시유재산 매각이나 경영수익을 통한 특정재원을 조달한다고 보는데 재원확보

방안 역시 장기적이고 막연한 대안보다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계획한 연차별 재원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져야 하겠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요지	답변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증 이유 (1,263평) ○ 입찰내용에 대한 설명 ○ 입찰과정상 문제점은 ○ 낙찰가에 대한 시의견은 ○ 담합의혹에 대한 시의견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 11월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것임. ○ 95. 2. 17 15:00 시 후생관에서 입찰 ○ 입찰참가회사 : 12개사 ○ 낙찰회사 : 4개사 - 계룡, 영진, 대아, 현대개발 ○ 설계금액 : 854억 ○ 예정가 : 838억 ○ 낙찰가 : 787억 ○ 낙찰율 : 93.86% ○ 없었음. ○ 이상적이라고는 볼수 없고 다소 높은감이 있음. ○ 현재로써는 담합의혹은 없었다고 봄.

V. 심사결과 : 원안가결